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합5288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영

변론 종결2022. 9. 2.

판결 선고2022. 10.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E이 피고 B에 대하여 한 2020. 9. 4.자 20,000,000원, 2020. 9. 16.자 97,000,000원, 2020. 10. 28.자 80,500,000원, 2020. 11. 4.자 27,000,000원, 2020. 11. 23.자 10,000,000원, 2020. 11. 30.자 6,000,000원, 2020. 12. 15.자 5,000,000원의 각 금원 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E이 피고 C에 대하여 한 2020. 12. 11.자 35,12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35,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E이 피고 D에 대하여 한 2020. 10. 23.자 5,000,000원, 2020. 12. 15.자 20,000,000원의 각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D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 제1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자녀이며, 피고 B은 E과 2019. 1. 6.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1년경 이혼하였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금전 대여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9. 4.부터 2020. 12. 14.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E에게 합계 372,500,000원을 송금하였다.

1	2020. 9. 4.	30,000,000
2	2020. 9. 16.	100,000,000
3	2020. 9. 22.	47,500,000
4	2020. 10. 23.	20,000,000
5	2020. 10. 24.	5,000,000
6	2020. 11. 4.	30,000,000
7	2020. 11. 23.	50,000,000
8	2020. 12. 11.	80,000,000

1	2020. 9. 4.	30,000,000
9	2020. 12. 14.	10,000,000
합계	372,500,000	

2) E은 2020. 10. 11.부터 2020. 12.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7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1) 2021.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차용증

이억구천만원(₩290,000,000)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20. 9. 4.부터 2020. 12. 14.까지 여러 횟수에 나눠서 빌렸습니다.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대출이자 일백육십만원(1,600,000원)은 매월 20일, 원금은 2021. 4. 1.까지 갚겠습니다.

2021. 1. 29.

채무자 이름: E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생략)

채권자 이름 : A(원고)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생략)

3) 원고는 2021. 2. 4. E에게 94,000,000원(이하 위 금원과 위 제1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9. 4.부터 2020. 12. 14.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E에게 송금한 합계 372,500,000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4) 그 후 E이 제1 차용증에 따른 지급기일인 2021. 4. 1.까지 원고에게 차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E으로부터 2021. 4. 9.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다. 2)

차용증

차용금액 : 일금 삼억팔천팔백오십만원(388,500,000)

차용일자 : 2020. 9. 4. ~ 2021. 2. 4.까지

상환일자 : 2021. 4. 1.

차용이자 : 연 20%

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차용한 것을 확인합니다.

다음

이자는 매월 말일날 채권자가 정한 10일 날 지불하겠습니다.

원금은 2021. 4. 1.까지 변제하겠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4. 9.

채무자 : E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생략)

채권자 : 원고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생략)

다. E의 피고 B 등에 대한 송금

E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9. 4.부터 2020. 12. 15.까지 일금 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255,000,000원3) 을 송금하였고, 2020. 12. 11. F에게 33,800,000원, G에게 1,32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20. 10. 23. 및 2020. 12. 15. H에게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E의 피고 B 등에 대한 위 각 송금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이라 하고, 위 각 송금행위를 구분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제○ 송금행위'라 한다).

1	2020. 9. 4.	피고 B	20,000,000	제1 송금행위
2	2020. 9. 16.	피고 B	97,000,000	제2 송금행위
3	2020. 10. 28.	피고 B	90,000,0004) 원고는 소장 4면을 통해 E이 2020. 10. 28. 15:38경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원이 '80,5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2호증(E의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상세조회)에는 E이 같은 날 15:38경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원의 액수가 '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3 송금행위

1	2020. 9. 4.	피고 B	20,000,000	제1 송금행위
4	2020. 11. 4.	피고 B	27,000,000	제4 송금행위
5	2020. 11. 23.	피고 B	10,000,000	제5 송금행위
6	2020. 11. 30.	피고 B	6,000,000	제6 송금행위
7	2020. 12. 15.	피고 B	5,000,000	제7 송금행위
합계	255,000,000			
8	2020. 12. 11.	F	33,800,000	제8 송금행위
9	2020. 12. 11.	G	1,320,000	제9 송금행위
합계	35,120,000			
10	2020. 10. 23.	H	5,000,000	제10 송금행위
11	2020. 12. 15.	H	20,000,000	제11 송금행위
합계	25,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9. 4.부터 2021. 2. 4.까지 E에게 합계 466,500,000원을 대여하고 E으로부터 2020. 10. 11.부터 2020. 12. 31.까지 위 대여금 중 합계 78,000,000원을 반환받은 후 E으로부터 제2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는바, 원고는 E에 대하여 388,500,000원(= 원고가 2020. 9. 4.부터 2021. 2. 4.까지 E에게 대여한 금원 466,500,000원 - 원고가 2020. 10. 11.부터 2020. 12. 31.까지 E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 78,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부분을 그 즉시 피고 B 등에게 송금하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당시 E의 배우자였던 피고 B와 피고 B의

자녀들인 피고 C, D에게 무상으로 귀속시켰는바, ① 제1 내지 7 송금행위는 E의 피고 B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② 제8 송금행위는 피고 C이 F과 사이에 화성시 J아파트, K호(이하 'J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일부를, 제9 송금행위는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인 G에 대한 중개수수료 1,320,000원을 E이 각 지급한 것으로 위 각 송금행위는 E의 피고 C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며, ③ 제10 송금행위는 피고 D가 2020. 10. 20. H과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L아파트, M호(이하 '수원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24,500,000원 중 일부를, 제11 송금행위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 465,000,000원 중 일부를 E이 각 지급한 것으로 위 각 송금행위는 E의 피고 D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E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송금행위 당시 피고 B은 E의 배우자, 피고 C, D는 피고 B의 자녀들로서 E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E은 피고들과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제1 내지 7 송금행위에 따른 송금액 합계 245,000,000원5), 피고 C은 제8,9 송금행위에 따른 송금액 합계 35,120,000원6), 피고 D는 제10, 11 송금행위에 따른 송금액 합계 25,000,000원7)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총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또한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E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E이 배우자였던 피고 B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거나 피고들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 대여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20. 9. 4.부터 2021. 2. 4.까지 E에게 합계 466,500,000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2020. 10. 11.부터 2020. 12. 31.까지 합계 78,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E이 2021. 4. 9.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제2 차용증에 '차용금액 388,500,000원, 차용일자 2020. 9. 4.부터 2021. 2. 4.까지, 상환일자 2021. 4. 1., 차용이자 연 20%'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통해 2020. 9. 4.부터 2020. 12. 15.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5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20. 12. 11. F에게 33,800,000원, G에게 1,32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20. 10. 23. 및 2020. 12. 15. H에게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2020. 7. 30. J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이 2020. 12. 14. J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피고 D가 2020. 10. 20. 수원 아파트의 소유자인 H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2. 15.부터 2022. 1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호증의 1, 갑 제36호증, 을 제1 내지 4, 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E의 피고 B에 대한 제1 내지 7 송금행위 관련 (1) 제1, 4, 5, 6 송금행위

살피건대, E이 피고 B에게 2020. 9. 4. 20,000,000원, 2020. 11. 4. 27,000,000원, 2020. 11. 23. 10,000,000원, 2020. 11. 30. 6,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E이 제1, 4, 5, 6 송금행위를 통해 위 각 송금행위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 B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각 송금행위로 지급된 위 각 금원이 피고 B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점, ② E이 2020. 11. 30. 피고 B과 메시지(을 제7호증)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E이 피고 B에게 '지난 달 이자 주지 않았어? 2천만 원. 이것 저것 내라고, 다른 건 몰라도 은행이자는 한 번도 안 밀리고 내려고

신경쓰거든'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 B이 위 메시지에 대한 회신으로 카드대금 결제 내역과 함께 '카드값 냈나봐'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E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23호증)에는 '성인이 된 두 자녀까지 챙기며 생활하다 보니 한 달 생활비가 다른 일반 가정보다 몇 배로 들어갔고, 매달 고정생활비로 30,000,000원 이상이 필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카드대금, 대출금 이자 등이 지급된 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피고 B이 제1, 4, 5, 6 송금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각 금원은 E이 피고 B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보낸 금원으로 이후 카드대금, 자동차 리스료, 대출금 이자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었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은 무자력 상태에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 B은 E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인 2019. 3. 19. N에 대하여 10억 여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였다는 것인바8)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출된 금원은 E과 피고들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원고는 피고 B이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제1, 4, 5, 6 송금행위로 지급된 각 금원 외에도 E과 피고 B 사이에 별도의 금전거래 또는 일상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송금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사안을 들어 남편이 송금한 금원을 아내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위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 사안에서 사해행위로 다투어졌던 송금행위는 채무자인 남편의 해외도피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1회의 송금행위였음에 반해 제1, 4, 5, 6 송금행위는 약 3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아래 제3의 다.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E이 원고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피고 B과 통모하여 위 각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위 판결 사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판결의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4, 5, 6 송금행위로 지급된 각 금원은 E이 피고 B에게 생활비, 카드대금, 대출금 이자 등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과 피고 B 사이에 E이 제1, 4, 5, 6

송금행위를 통해 지급한 각 금원을 피고 B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이를 피고 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 데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제2 송금행위

살피건대, E이 2020. 9. 16. 피고 B에게 9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2020. 7. 13. 피고 B 명의의 P은행 계좌로 97,000,000원을 송금한 직후 위 계좌에서 E에게 96,000,000원이 출금되었고, E 명의의 I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갑 제27호증) 중 위 96,000,000원의 입금거래에 대한 적요 란에 'O 9. 13.'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 B이 2020. 7. 13. 동생인 O으로부터 97,000,000원을 빌려 E에게 96,000,000원을 전달하면서 두 달 후인 9. 13.까지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납득할 만한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점, ② 이후 E이 2020. 9. 16. 피고 B에게 97,000,000원을 송금하는 제2 송금행위를 한 직후 피고 B은 같은 날 O에게 97,6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제2 송금행위가 앞서 본위 96,000,000원의 입금거래에 대한 적요 란에 기재된 일자인 '9. 13.'에 근접한 2020. 9. 16.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2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직후 피고 B은 O에게 곧바로 위 송금액과 유사한 97,600,000원9) 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제2 송금행위로 지급된 금원은 O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③ 원고는 피고 B이 제2 송금행위로 지급받은 97,000,000원이 E이 2020. 7. 13.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96,000,000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97,000,000원은 '한 달 생활비를 비롯하여 피고 B의 사치스러운 생활, 골프, 명품구입비 등에 사용되었다'는 E 진술서(갑 제23호증)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 뿐, 위 97,000,000원이 피고 B에게 지급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E과 함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그로부터 이자 수입을 얻는 이른바 이자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인 O으로부터 97,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자놀이를 위해 E에게 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B이 2020. 7. 13. O으로부터 97,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E에게 전달한 96,000,000원은 E과 피고 B이 공동으로 사용한 일종의 사업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 B이 O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97,000,000원 중 96,000,000원을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E이 위 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 이상 단지 O이 당초 E이 아닌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97,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원을 E과 무관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 송금행위로 지급된 금원은 E이 O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과 피고 B 사이에 E이 제2 송금행위를 통해 지급한 금원을 피고 B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이를 피고 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데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제3 송금행위

살피건대, E이 2020. 10. 28. 피고 B에게 9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피고 B이 제3 송금행위로 지급받은 9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B이 벤틀리 Bentayga 차량의 보증금 94,929,000원 전액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위 차량의 판매대금을 E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차량에 관한 계약확인서, 피고 B의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등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 B이 E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금원을 보유하고 있다가 위 금원으로 위 차량의 보증금을 납부한 것일 뿐 위 차량의 보증금을 실제 부담한 것은 피고 B이 아닌 E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E과 피고 B 사이에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입출금거래내역을 포함한 다수의 입출금거래내역이 존재하고, 위 입출금거래내역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E이 위 차량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한편 원고는 제3 송금행위로 지급된 금원은 '피고 B이 E에게 J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과 1년간 차임, 수원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여 E이 벤틀리 Bentayga 차량을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마련한 금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과 E은 위 차량을 혼인신고 이후인 2019. 5.경 구입한 후 이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위 차량에 관한 운용리스계약은 피고 B의 명의로 체결된 반면 그 보증금의 실질적 지급 주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위 차량에 관한 소유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위 차량에 관한 운용리스계약이 2020. 10.경 해지됨에 따라 2020. 10. 28. E의 계좌로 지급된 위 차량에 관한 정산금은 피고 B와 E의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E이 제3 송금행위를 통해 위 정산금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정산금 중 E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피고 B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와 피고 B 사이에 E이 제3 송금행위를 통해 지급한 금원을 피고 B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이를 피고 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데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제7 송금행위

살피건대, E이 2020. 12. 15.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피고 B이 제7 송금행위로 지급받은 5,000,000원이 E에게 같은 날 보내주었던 5,000,000원을 즉시 변제받은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위 5,000,000원이 피고 B에게 지급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7 송금행위로 지급된 금원은 E이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와 피고 B 사이에 E이 제7 송금행위를 통해 지급한 금원을 피고 B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이를 피고 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데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E의 F 등에 대한 제8,9 송금행위 및 E의 H에 대한 제10, 11 송금행위 관련 살피건대, E이 2020. 12. 11. F에게 33,800,000원, G에게 1,32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20. 10. 23. 및 2020. 12. 15. H에게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는 2018. 7.

3. Q와 사이에 구리시 R아파트 S호(이하 'R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7. 13.부터 2020. 7.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 10. 31. 위 임대차보증금 중 62,857,188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19. 11. 1. 피고 B에게 63,140,867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E에게 위 63,140,867원 중 5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9. 11. 25. E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11위 사실에 비추어 '피고 C, D가 R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위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대로 사업자금으로 잠시 대여하여 달라는

E의 부탁에 따라 2019. 11.경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중 대부분인 60,000,000원을 E에게

대여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납득할 만한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점, ② E은 2020. 12. 11. 제8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 C이 F과 사이에 J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33,800,000원을, 같은 날 제9 송금행위를 통해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1,32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20. 10. 23. 제10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 D가 H과 사이에 수원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000원을, 2020. 12. 15. 제10

송금행위를 통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피고 B이 E에게 합계 60,000,000원을 송금한 시기와 위 각 송금행위 당시 사이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E이 제8 내지 11 송금행위를 통해 송금한 합계

60,120,000원은 피고 B이 피고 D로부터 R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송금받아 2019. 11. 1. 및

2019. 11. 25. E에게 송금한 합계 60,000,000원과 유사한 금액인 점, 피고 B이 2019. 11. 1. 피고

D로부터 송금받아 같은 날 E에게 그중 일부를 송금한 금원은 피고 C, D가 거주하던 R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고, E이 제8 내지 11 송금행위를 통해 F 등에게 송금한 각 금원은 피고 C이 J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피고 D가 수원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각 금원의 지급 명목이 피고 C, D의 거주비용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E과 피고들은 E의 제8 내지 11 송금행위를 E의 피고 C, D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설령 E이 피고 C, D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E은 2019. 9. 18. 의정부시 U건물 V호에 관한

지역주택조합원 권리를 피고 D 명의로 취득하여 주면서 계약 당일 현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10. 26. W에게 10,000,000원, 2019. 12. 11. 피고 B와 W에게 55,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9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후 피고 B이 위 지역주택조합원 권리 취득을 위한 대금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피고 D 명의로 위 지역주택조합원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대금을 부담함으로써 피고 C, D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8 내지 11 송금행위로 지급된 각 금원은 E이 피고 C, D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과 피고 C, D 사이에 E이 제8 내지 11 송금행위를 통해 지급한 각 금원을 피고 C, D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이를 피고 C, D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데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E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E은 위 각 송금행위 당시 E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들과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E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통해 2020. 9. 4.부터 2020. 12. 15.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5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20. 12. 11. F에게 피고 C이 J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33,800,000원, G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1,32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20. 10. 23. 및 2020. 12. 15. H에게 피고 D가 수원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2 송금행위로 지급된 금원은 E이 O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제8 내지 11 송금행위로 지급된 각 금원은 E이 피고 C, D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8, 17, 2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피고들과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송금행위는 E이 2020. 12. 15.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제7 송금행위인데, 12위 송금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21. 1. 24. 피고 B이 E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을 제8호증)에는 '내가 갖다 준 돈은 다 어디로 갔는데? 전부 당신이 빌린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야지 왜 신경쓰지 말라하고 전세를 얻니 집을 사주니 카지노에서 돈을 찾아오면 된다는 둥 부부 간에 거짓말 거래는 너무나 것 아니냐'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피고 B은 E에게 자신이 주었던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B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2021. 1.경 무렵에서야 E이 원고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E이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내용(갑 제8, 17, 21호증)과 E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23호증)에는 'E이 결혼 생활 동안 늘 빚이 많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피고 B은 E이 가지고 오는 돈들이 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빌려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X에서 이사가기 전 가족들과 밥 먹을 때 피고 C, D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상황 설명을 했다', '피고 B이 결혼 전에 받은 대출이자, 골프 라운딩 비용, 쇼핑, 성형시술 등을 해결하고자 무리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돌려막기에 한계가 있었다', '2010. 10.초경 8억 원의 고소 건으로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 왔었고 제가 여러 고소 건과 채무로 인해서 해외로 도피해서 정리하고 들어와야겠다고 피고 B에게 말했고, 여러 차례 의논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E의 진술서는 피고 B과 이혼 이후 작성된 것으로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주된 내용은 E과 피고 B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들이 지출한 금원은 모두 E이 부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고,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피고들과 통모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E은 피고 B과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원고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인 2021. 1.경 무렵에서야 E이 원고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자신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형석

판사이경민

판사이현지

1)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20. 10. 11.	20,000,000
2	2020. 10. 20.	30,000,000
3	2020. 12. 9.	10,000,000
4	2020. 12. 16.	5,000,000
5	2020. 12. 20.	8,000,000
6	2020. 12. 31.	5,000,000
합계	78,000,000	

2) 제2 차용증의 하단에는 E의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3) 갑 제2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E과 피고 B 사이에 이루어진 다수의 입출금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그 중 일곱 건의 출금거래내역을 특정하여 그 각 송금행위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원고는 소장 4면을 통해 E이 2020. 10. 28. 15:38경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원이

'80,5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2호증(E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상세조회)에는 E이 같은 날 15:38경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원의 액수가 '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 제1 송금행위에 따른 송금액 20,000,000원 + 제2 송금행위에 따른 송금액 97,000,000원 + 제3 송금행위에 따른 송금액 중 80,500,000원 + 제4 송금행위에 따른 송금액 27,000,000원 + 제5 송금행위에 따른 송금액 10,000,000원 + 제6 송금행위에 따른 송금액 6,000,000원 + 제7 송금행위에 따른 송금액 5,000,000원

6) = 제8 송금행위에 따른 송금액 33,800,000원 + 제9 송금행위에 따른 송금액 1,320,000원

7) = 제10 송금행위에 따른 송금액 5,000,000원 + 제11 송금행위에 따른 송금액 20,000,000원

8) 원고의 2022. 5. 4.자 준비서면 9면 참조

9) 이 2020. 7. 13. 피고 B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한 97,000,000원에 약 2개월 동안(2020. 7. 13. ~ 2020. 9. 16.) 발생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10)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제2항).

11) 원고는 2022. 5. 4.자 준비서면 3면을 통해 피고 B이 2019. 11. 25. E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6호증의 1[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E과 피고 B 사이의 입금 거래내역] 2면, 을 제10호증(출금내역)에는 피고 B이 2019. 11. 25. E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다.

12) 갑 제2호증(E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상세조회)에는 E의 H에 대한 제11 송금행위의 일시가 '2020. 12. 15. 09:42경'으로, E의 피고 B에 대한 제7 송금행위의 일시가 '같은 날 21:40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